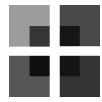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 제한
과태료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025. 11.

이 가이드라인은 정책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종로구



목 차



1. 정책 개요	1
2. 과태료 부과 대상	1
3. 과태료 부과 예외차량	2
4. 적용지역	3
5. 과태료 부과금액	3
6. 과태료 부과절차	3
7. 정책 Q & A	4
[붙임 1] 특별관리지역 지형도	9
[붙임 2] 예외차량 신청서	10

1

정책 개요

□ 배경 및 취지

- 북촌 일대 전세버스의 반복 통행으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저해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통해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개요

-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조치사항 : 전세버스 통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유예기간 : 2025. 7. 1. ~ 2025. 12. 31. (계도장 발송)
- 시행기간 : 2026. 1. 1.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부과 대상

□ 단속대상 차량 정의

구분	관련 법령 조항	내용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차량	중형 이상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 차량 규격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종류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3

과태료 부과 예외 차량

□ 공익·정기 목적 차량

- 통학버스(유치원, 초·중·고, 학원)
- 통근버스(기관, 회사 소속 등)
- 마을버스(정규 노선 운영)
- 기관 행사 및 견학 등 공익 목적 차량

□ 생활 목적 차량

-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 참석 차량
- 주민 가족여행 등 일시적 이동 차량
- 장애인 수송 차량(도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관광객)

□ 불가피한 경우 차량

- 도로 구조상 제한구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우
- 기타 경유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사항

- ▶ 예외차량은 관광객 수송 목적 운행이 금지됩니다.
- ▶ 예외차량 신청 시 운행시간 및 통과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 제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예외는 즉시 취소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 예외차량은 사전 신청 또는 단속 후 의견진술 제출을 통해 심사 후 인정됩니다.
-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직접 예외차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용 기관·학교·회사 등 승인 주체가 되는 곳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 임의·반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예외차량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접수 → 예외차량 적정성 검토 → 통보
-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02-2148-1857)

4

적용 지역

□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 구체적 위치는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 가능

※ 스마트서울맵 주소 :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P5oo>

5

과태료 부과금액

구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전세버스 통행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 부과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제20조

6

과태료 부과 절차

① 위반사실 적발

○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사실 적발

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위반 사실 및 과태료 부과 예정 내용을 명시한 사전통지서 발급

-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자진 납부 후에는 의견진술 불가

○ 의견제출 시 기한 내 관광체육과로 서면 또는 방문 제출

③ 과태료 부과 결정 및 통지

○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감경 대상 인정 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 가능

④ 과태료 납부

○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과태료 납부

⑤ 이의 신청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Q&A 1

Q. 전세버스 통행 제한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A. 북촌 일대의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북촌로 일대를 전세버스 통행제한 구역으로 설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을 제한합니다.

Q&A 2

Q.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7항 및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A 3

Q. 전세버스 통행 제한 정책은 왜 시행되었나요?

A. 북촌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반복적으로 진입 하면서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보행자 안전사고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형 전세버스의 진입으로 교통 흐름이 크게 저해되고, 긴급차량 통행에도 지장이 발생하는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종로구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세버스 통행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하여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A 4

Q. 전세버스 통행제한 구역은 어디인가요?

A.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은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일대입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통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5

Q. 왜 북촌로 일대에서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해야 하나요?

A. 북촌로 일대는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구간이 존재하는 등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노약자 보행도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일반 도로라 하더라도 실선 구간은 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점선 구간 역시 5분 이내의 일시 정차만 허용되어 전세버스가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대기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도로 구조에서 대형 전세버스와 보행 취약계층이 혼재할 경우 교통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본 통행제한 조치는 단순한 교통관리 차원을 넘어 어린이·청소년·노약자 보호와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공익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Q&A 6

Q. 전세버스 통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40만원, 3차 위반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Q&A 7

Q. 단속대상은 누구인가요?

A.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중형 이상 승합자동차입니다. 즉, 승차정원 16인 이상 전세버스가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Q&A 8

Q. 예외차량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예외차량으로는 통근버스, 통학버스, 마을버스, 공익 목적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직원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을 수송하는 통학버스, 정규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그리고 공공기관 행사나 시설 운영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차량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차량은 사전 신청을 통해 미리 예외차량 승인을 받거나 단속 후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검토 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A 9

Q. 예외차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예외차량 신청 방법은 사전신청 방식과 사후 의견진술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전 신청은 통행 전에 차량번호, 운행시간, 통행 사유 등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사전 승인된 차량은 단속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승인된 시간이나 목적과 다르게 운행할 경우 예외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속 후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일시적·비반복적 생활 목적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A 10

Q.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위반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어 이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Q&A 11

Q. 주변에 전세버스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A. 네.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반경 1km 이내에 전세버스 승하차 구역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삼청로(국립현대미술관 앞), 삼일대로(탑골공원 서측), 돈화문로(창덕궁 맞은편)이 해당 지점입니다.

이 구역들은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며, 북촌 일대의 보행 중심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전세버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며,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A 12

Q. 전세버스는 북촌 방문 시 어디에 주차해야 하나요?

A.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북촌로 구간 내 전세버스의 직접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관광객의 북촌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북촌을 방문하는 전세버스는 기존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을 이용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 주차장(전세버스 48면), 탑골공원 주차장(2면) 등이 주요 접근 주차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점에서 북촌까지는 도보로 약 10~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Q&A 13

Q. 결혼식·장례식, 가족여행 차량도 예외인가요?

A.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 참석을 위한 차량, 또는 순수 가족여행 등 일시적인 생활 목적 차량은 예외차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초청장·부고장·행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순수 비상업적·비반복적 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승인됩니다.

Q&A 14

Q. 예외차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매번 사전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증 등 공식 증빙자료가 있다면, 단속 후에도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이 어렵더라도 단속 후 의견진술 단계에서 확인증 제출로 공익 목적 방문임이 확인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하나, 자료가 불충분하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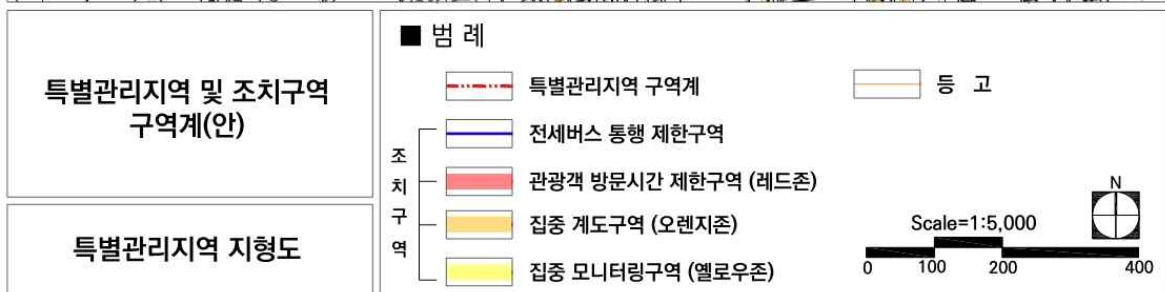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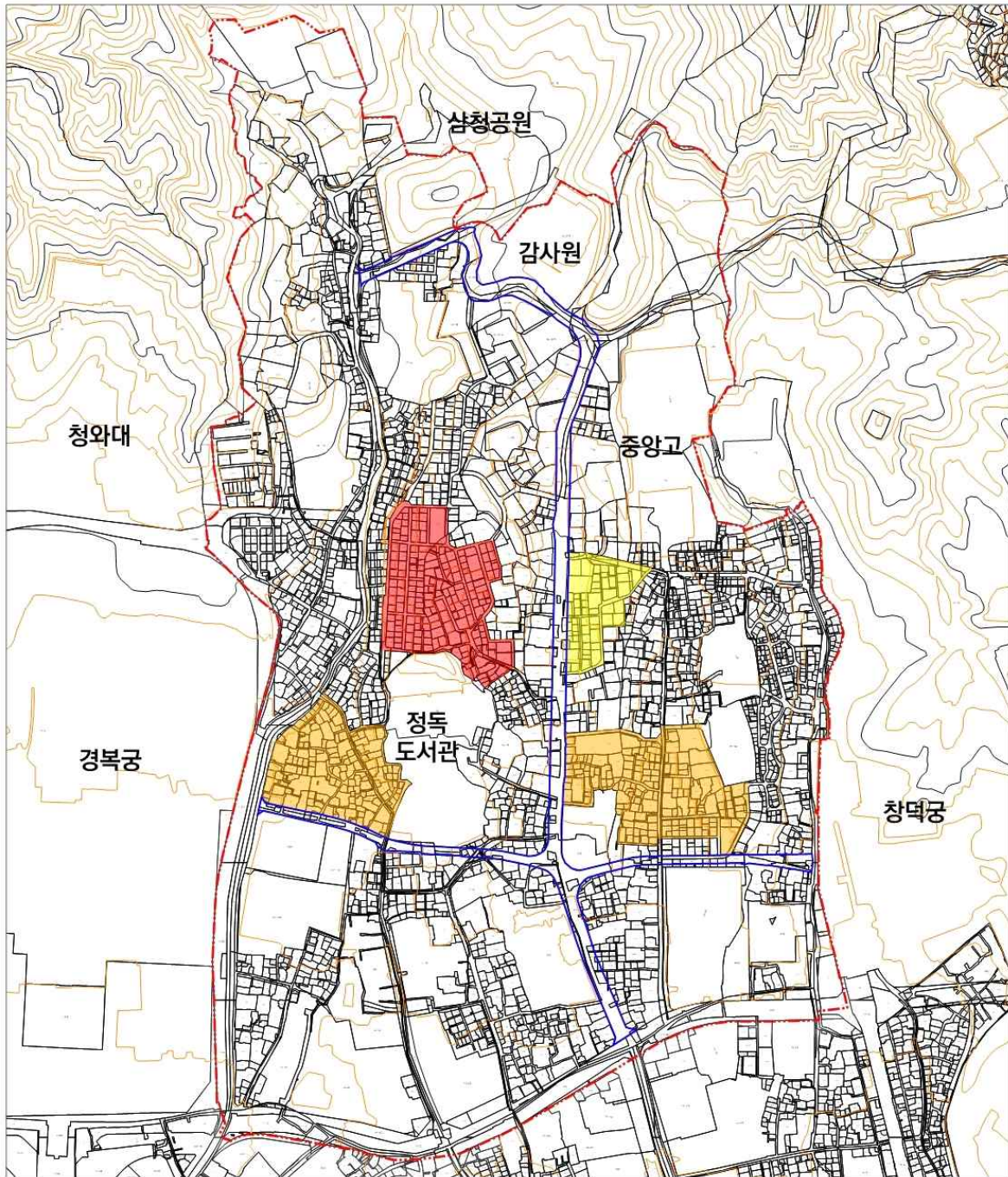
Q&A 15

Q. 장애인을 수송하는 차량도 예외차량으로 인정되나요?

A. 장애인을 수송하는 차량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예외차량으로 인정되며, 장애인이 관광 목적 방문이더라도 장애인 관광객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예외 시에는 도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통행이 허용됩니다.

다만, 장애인 수송 차량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의 반복적인 관광객 대량 수송 또는 차량 소유자의 관광영업 목적 운행이 확인될 경우 예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번호·운행시간·이동 목적 등이 기재된 예외 차량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 수송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또는 직인 포함 확인증 등을 의견진술 절차에서 제출하여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가이드라인 변경 안내 예정

